

경북대 한방바이오융합진흥원 - (사)대구식품협회

## 업무협력 협약서

경북대학교 한방바이오융합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과 (사)대구식품협회(이하 “협회”라 함)는 지역 식품산업 진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 지원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고자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진흥원”과 “협회”가 지역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상호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확립하고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사항) 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협력사항에 대하여 공동 협력한다.

1. 지역 식품클러스터 육성 기반 마련 상호 협력
2. 지역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컨트롤타워 마련 상호 협력
3. 지역 식품산업 글로벌 시장 확대 상호 협력
4. 지역 식품산업 전문 인력양성 상호 협력
5. 기타 양 기관의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제3조(비밀유지) “진흥원”과 “협회”는 본 협약과 관련된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상대방 및 당사자의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는 본 협약의 효력이 종료된 이후에도 같다.

제4조(대외홍보) 양 기관은 공동 협력내용 및 사업 추진결과를 외부에 홍보하고자 할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양 기관의 공동명의로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협약서의 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에 대하여 “진흥원”과 “협회”간 이견이 있거나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일반적 관례에 따라 협약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효력 및 유효기간) 본 협약의 효력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에 어느 일방으로부터 해지에 대한 통보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2년씩 그 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각 기관은 본 협약서의 협력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진흥원”과 “대구식품협회”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2년 4월 27일

경북대학교  
한방바이오융합진흥원

원



장

(사) 대구식품협회

회

장

